

## 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 1. 사용시간

구분	시간	비고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 2.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공연	행사	
공연장	오전	100,000	150,000	
	오후	140,000	190,000	
	야간	200,000	250,000	
전시실	1일	30,000		○ 1일 사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연습실	1회	40,000		

#### ※ 비고

1. 1회란 오전.오후.야간 중 개최하는 하나의 공연.전시.행사를 말한다.
2.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3.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준비 또는 예행연습을 위하여 대관할 경우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5. 2회 이상 공연할 경우 각 공연 사이에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6. 공연은 공연 자체가 목적인 국악.풍물.클래식 음악.대중음악, 연극.무용.오페라.뮤지컬 및 영화 등을 말한다.  
다만, 관람 대상이 한정되는 특정 단체의 공연에는 행사 기본시설 사용료를 적용한다.
7. 영화.시예프(CF).방송의 촬영을 위한 시설 사용료는 행사 기본시설 사용료로 정한다.
8. 공연장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 가. 30분 미만: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 나.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 다. 1시간 이상: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퍼센트
9. 부대설비 사용료는 따로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10퍼센트를 따로 부담한다.

### 3.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원)

부대설비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피아노	그랜드 대형 (외산)		1회	60,000	○ 피아노 조율은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pitch) 변경 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 복구한다.
무대	덧마루	1일 기본 (66제곱미터)		50,000	○ 덧마루의 설치.전환.해체 작업 및 이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추가 (3.3제곱미터)		10,000	
	음향반사판	1일		70,000	
	댄스 플로어 (무용 매트)	1일		100,000	
음향	기본 사용료	1일		100,000	○ 음향 콘솔, 메인 스피커, 유선 마이크 3개, CD플레이어 1대 포함
	모니터스피커	1일 / 1개		10,000	○ 앰프 포함
	유선 마이크 (다이내믹)	1일 / 1개		5,000	○ 마이크 스탠드 포함
	유선 마이크 (콘덴서)	1회 / 1개		10,000	
	무선 마이크	1회 1채널		15,000	
	빔프로젝터 (15,000Ansi)	1회		200,000	
	녹음(CD)	1회		10,000	○ 녹음, 녹화용 미디어 별도
	녹화	1회		30,000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부대설비				
조명	기본 조명	1회	40,000	○ 콘솔 기구로 조종되는 조명 연출을 필요로 할 경우에만 조명 사용료를 징수한다.
	무빙라이트 Spot	1회/대	50,000	
	무빙라이트 LED Wash	1회/대	50,000	
	PAR64 1킬로와트	1회/대	1,000	
	PAR46 250와트	1회/조	3,000	
	ERS 750와트 (SourceFour)	1회/대	1,000	
	포그 머신 ZR44/Hazer	1회/대	30,000	○ 포그액 포함
	드라이아이스 Aqua3300	1회/대	20,000	
	스트로브 Atomic3000	1회/대	10,000	
	팔로우 라이트 Follow Spot 2킬로와트	1회/대	30,000	
냉난방	공연장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비(전기료 포함) 시가에 10퍼센트를 가산	○ 예열 시간을 포함한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전시실	1시간		

※ 비고

- 1회란 오전.오후.야간 중 개최하는 하나의 공연.전시.행사를 말한다.
- 공연 시 전력 소비가 전체 시설의 전력 사용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을 경우 발전차를 의무 사용하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 설치한다.
- 조명 연출 및 조명 콘솔, 무빙라이트, 팔로우 라이트 등 부대설비의 운영은 사용자가 한다.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및 드라이아이스, 마이크 배터리 등 부대시설의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사용자는 과실로 장비에 이상이 생긴 경우 수선비용을 지불하고, 장비를 파손한 경우에는 현물로 배상한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따로 정할 수 있다.